

(앞쪽)

제 호
인증심사원증
사 진 3cm×4cm (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)
성명

55mm×85mm(PET-G카드, 연녹색)

(뒤쪽)

인증심사원증
성 명:
생년월일:
위 사람은 「축산법」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
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. 1. 「축산법」 제42조의3·제42조의4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2. 「축산법」 제42조의10에 따른 사후관리 조사 3. 심사 및 조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